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전기업체의 대응 방안 (4)

홍 광 표
동아건설산업(주) 이사

2. 본 론

나. WTO 체제의 출범과 중전기 산업

(3) WTO체제가 중전기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세계무역질서를 規律하여 왔던 GATT체제를 대신하는 WTO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WTO협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전기제품의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협정은 과거 GATT체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무역관련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그리고 정부조달협정은 향후 우리 중전기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의 공산품 수입 자유화율은 100% 이루어

져 있고 WTO협정의 영향으로 관세율의 추가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의 중전기 산업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의 제품들과 가격과 품질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환기적인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체결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반덤핑관세평가,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무역제도 검토제도, 그리고 정부조달 등은 우리의 중전기 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도 정부조달협정, 보조금 상계관세,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등은 주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중전기 업체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97년부터 발효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중전기 산업의 수출과 수입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측면에서 국내중전기기 전체수요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조달분야가 외국업체들에게 개방됨으로 해서 수요의 상당부분이 외국기업들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행히 중소기업 특별구매 품목과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중전기기 제품의 일부가 조달협정 예외품목으로 인정되어 개방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느 정도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조달협정 예외품목으로 인정된 품목은 전기조합 16개 전선조합 9개 전지조합 1개 등 단체수의계약 품목 26개와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구매품목 중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개폐기 및 차단기류, 배전반 및 제어반류, 전선 및 케이블 등과 한국통신에서 구매하는 통신용 부품 등이다.

그러나 조달협정 예외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향후 전개될 국제정세에 따라서 조달협정품목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인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면에 있어서 조달협정은 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정부 조달시장도 우리기업에 개방되는 만큼 향후 우리기업이 외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의 조달시장에 참여한다면 조달협정은 우리의 해외시장 개척가능성을 그만큼 넓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조달시장의 개방 이외에도 WTO협정으로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제도가 폐지 또는 개정되게 되어 있어 현재 산업기술 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서도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선진국들로부터 수

입해오던 첨단핵심기술의 수입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 오던 중소기업이 기술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WTO협정의 발효로 인한 우리 중전기기 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책을 주요협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 상계관세

기업의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크다. 즉, 기술개발 자체의 성공여부와 개발된 상품의 시장성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신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생존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하에서는 각국의 기술 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외국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신기술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기업의 신기술개발은 기업자체의 존립차원의 문제에서 벗어나 한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WTO체제가 출범하고 WTO협정에 새로이 도입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산 기계 구입 지원자금 등 그동안 정부가 중전기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온 각종 보조금 제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전망이어서 우리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각종 정부의 산업지원제도의 변경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상당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보조금의 형태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보조금이란 각국의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산업 혹은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견기업계의 대응방안(4) ◆

의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혜택, 특정성 등 세가지의 특성을 가진 정부의 지원은 모두 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리고 수입억제 혹은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협상발표 후 3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금지보조금 중 수출성과 부 보조금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수입대체효과 보조금은 5년 이내에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3.25%를 넘는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2년 이내에 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계시장점유율 3.5% 이상인 품목은 주로 섬유, 직물, 의류, 철강, 전자제품, 신발, 완구 등이며 중전기제품은 아직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 세계시장 점유율에 의한 수출보조금 폐지는 아직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출지원 및 산업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지보조금, 상계 가능 보조금을 가능한 한 특정성이 없거나 무역왜곡 효과

〈표 10〉 금지보조금으로 분류가 확실시 되는 제도

보조금 명칭	성격(수단)	목적 및 대상
수출용 원자재 공급지 원제도	수출지원 (금융지원)	구매관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획득 지원
수출손실 준비금 손금 산업	수출지원 (조세지원)	외화획득 산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해외사업 소득 공제	수출지원 (조세지원)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 사업
해외사업 손실 준비금 손금산업	수출지원 (조세지원)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 사업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손금산업	수출지원 (조세지원)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 사업
해외접대비 손금 인정	수출지원 (조세지원)	외화획득사업 영위자의 조세부담 경감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수출지원 (조세지원)	제조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투자촉진
특별설비자금	투자촉진지원 (금융지원)	중소기업 등의 수출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자금 확충고급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1993.12

파가 없는 허용보조금, 또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 중 금지보조금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를 예시해 보면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금지보조금 판정 가능성이 있는 제도

보조금 명칭	성격(수단)	목적 및 대상
무역금융	수출지원 (금융지원)	수출촉진 및 외화획득률 제고
수출산업 설비 자금 대출제도	수출지원 (금융지원)	수출기업의 설비 촉진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수출 또는 수입대체가 크게 증대되는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중소 소재 부품 운전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수입대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중소기업에 운전자금지원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1993.12

〈표 12〉 상계가능보조금

보조금 명칭	성격(수단)	목적 및 대상
신기술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	기술개발지원 (조세지원)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투자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에서 공제 또는 취득가액 일정률의 특별상각 인정
공업발전 기금 중 합리화 사업지원	구조조정지원 (금융지원)	공업의 균형적 발전과 합리화 촉진
석유사업기금 중 산업구조조정자금	구조조정지원 (금융지원)	공업의 균형적 발전과 합리화 촉진
합병 또는 자산양수도 원화지원	구조조정지원 (조세지원)	합병지원, 자산처분지원
정리기업 인수 원화화 제도	구조조정지원 (조세지원)	산업합리화 지원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육성	구조조정지원 (조세지원)	외화획득사업 영위자의 조세부담 경감
국민투자기금	투자촉진지원 (금융지원)	중화학공업 관련분야의 시설투자촉진
특별설비투자지원	투자촉진지원 (조세지원)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공해방지 등 시설투자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	투자촉진지원 (조세지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적극 추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1993.12

이러한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조항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많은 산업지원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많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중전기 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중전기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시기에는 우리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제도를 우리 중전기 제품 수출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새로이 검토하여 WTO협정에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관련지원을 적절히 이용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신기술개발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배양되어 우리의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WTO협정의 범위 이내에서 적극 활용하여야 할 정부의 각종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조세지원
- 자금지원
- 기술정보지원
- 연구요원확보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
- 기술개발촉진 지원시책

1) 조세지원

기업의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래와 같이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 기술개발 준비금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투자 세액공제 또는 감

가상각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시험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감면
-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적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기술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 엔지니어링 사업 등에 대한 소득 공제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기타조세지원제도

2) 자금지원(표13 참조)

-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지원
- 한국전력공사의 기술개발자금지원
- 기타자금 지원제도

〈표 13〉 중전기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공업기반 기술사업	금 액	640	-	797	1733	85
	과제수	5	-	8	16	1
공업발전기금	금 액	590	1300	2000	2500	-
	과제수	5				
한전 R&D자금	금 액	-	5743	16826	18574	12300
	과제수		74	82	46	50
계	금 액	1230	7043	19623	22807	12385
	과제수	10	83	110	78	51

자료 : 한국전기공업협회

3) 기술정보지원

- 연구개발 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지원
-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4) 연구요원 확보지원

-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제도

5) 중소기업 기술지원

-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지원

- 제조업을 위한 자동화 및 기술지도지원
- 기업현장에 연구원 파견 기술개발지원
- 기타기술지원제도

6) 기술개발촉진 지원시책

- IR 52 장영실상
- 벤처기업상
- 국산신기술 인정 마크제도(일명 KT마크)
- 국산 신기술제품 지원
- 신기술인정 및 신기술 기업화 사업 인정제도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지원

(나) 지적재산권 협정

그동안 관련된 각종 국제보호조약에서 보호를 받아 오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들이 보호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중전기 산업에 대해서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기술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도입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직·간접비용의 추가부담과 기술개발자금 및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4〉 우리 중전기기업계의 R&D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4	1995(추정)	1996
총 투자	139,293	170,502(22.4)	230,105(35.0)
자체개발투자	128,242	157,538(22.8)	214,101(35.9)
기술도입비	11,501	12,964(17.3)	16,004(23.4)
총매출액 대비	3.0	2.7	3.2

자료 : 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 동향 및 '96년 전망 보고서, 1996. 1

그러나 이러한 기술도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전기 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표14와 같다.

기술개발투자의 경우 자체 개발 투자는 1995년보다 35.9% 증가한 2100억원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23.4% 증가한 160억원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기업의 자체기술 개발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기술개발 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아직도 3% 내외로 선진국의 투자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협정은 우리 중전기 업계의 기술개발 자체투자 및 기술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우리 기술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가 개발한 중전기 관련 신기술이 중국 등 후발개발도상국들에 의하여 불법복제되어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적재산권보호에 의한 국제규범이 강화되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대 후발개발도상국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전기기업계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WTO 협정의 성립을 우리 기술 수출의 계기로 삼아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 조달협정

세계의 무역질서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되고 정부조달시장이 '97년부터 개방되고 지적재산

권 보호협정의 영향으로 외국의 기술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중전기 산업의 해외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됨과 동시에 정부와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의 우리의 입찰시장도 외국기업에 개방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정부의 정부조달 부문에도 심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공기업이 구매하는 물품입찰이나 발주공사에 외국업체의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이는 1994년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2개국이 서명한 WTO협정이 1997년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199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유보하기로 한 양허범위의 조달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모든 외국업체들에 대해서 국내업체와 동등한 내국민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입찰공고방법 등도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각종 조달관련입찰 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정부의 보호아래 조달물자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해온 국내 중전기기업체의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조달물자 입찰을 둘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외국의 조달시장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국내의 기업들도 외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열리게 되는 만큼 향후의 해외시장 개척의 여지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같은 조달시장의 지각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정하였고, 올해 다시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 내무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정부관계부처와, 정부투자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달제도 국제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조달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7년 3월중 국제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례규정을 국가계약법 시행령과는 별도로 제정하고 4월에는 동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의 법령체계와 제도를 조사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7월경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최종확정된 특례규정안은 경제장차관회의에 상정되고 감사원과 법제처의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완료하게 되고 금년말부터는 회계직 공무원과 관련업계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달제도 국제화 추진기획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은

- 첫째, 조달협정과 배치되는 현행 국내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정과 협정내용의 반영,
 - 둘째, 국제입찰에만 적용할 법령의 제정
 - 셋째, 국제조달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 넷째,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 대책 마련
-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우선 안기부,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비상기획 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억 4300만원(13만 SDR)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55억원(5백만 SDR)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또 서울시 등 6개 시와 9개 도 또는 물품 서비스 2억 2000만원 건설 165억원 이상 23개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의 통신부품은 제외)은 물품 5억원 건설 165억원 이상의 조달물자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지역제한공사제 등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금액을 올해말까지 55억원 이하로 하향조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국내조달시장의 개방대상과 우리 정부의 조달제도 개선방안은 다음 표15, 16로 요약할 수 있다.

◆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전기업계 대응방안(4) ◆

〈표 15〉 조달시장개방대상

단위 : 만 SDR

구 분	개방대상기관	개 방 범 위
정 부	42개 중앙행정기관(안기부 등 4개 안보관련기관 제외)	-물품, 서비스: 13 -건설 : 500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등 6개 시와 9개 도	-물품, 서비스: 20 -건설 : 1,500
기타 기관	23개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의 통신부품은 제외)	-물품 : 45 -건설 : 1,500

〈표 16〉 조달제도 개정방향

현 행 규 정	개 정 방 향
*제한적 최저낙찰제 금액 - 공사 : 100억원 미만 - 용역 : 10억원 미만 (물품은 10억원 이상 적격심사, 10억원 미만은 최저가)	-공사 : 55억 미만 -용역 : 1억 5천만원 미만
*지역제한 한도액 - 공사 : 20억원 - 물품 용역 : 3억원	-공사 : 현행유지 -물품 및 용역 : 1억 5천만원
*입찰공고기간 - 10일	-국제입찰의 경우 40일
*공고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서울신문에 공고
*입찰서 사용언어	-국제입찰의 경우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병기
*낙찰자 통지 - 현장에서 통지	-관보 또는 신문공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설치근거규정(재경원에 설치)	-위원회의 조직, 운영, 절차 등 필요사항 규정
*기 타 - 지역의무 공동도급 - 기업집단 공동도급제한	-폐지검토 -폐지검토

중전기산업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입찰에 의한 주문생산이 주종을 이루어 왔고, 국내중전기 총생산의 85% 이상이 조달청, 한국전력 등 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의 관납에 의한 것임을 미루어 봤을 때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아 주로 단체수계약제도, 고유업종지정 등으로 정부의 보호를 통한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 및 부품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왔기 때문에 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 관 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타결된 관세협상의 내용은 1988년 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 합의사항인 평균관세를 인하 및 양허품목의 확대, 1993년 7월 4일 미국·EC·일본·캐나다 통상장관회의에서의 無稅化·관세조화 등의 합의, 그리고 1993년 11월 APEC 정상회담 및 미국 EC간 협상에서의 무세화·관세조화 합의 등으로 구분된다.

1994년 2월 14일 확정된 우리의 關稅引下讓許計劃에 따르면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1986년 평균 양허세율 17.9%에서 우루과이협정 발효일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9년 1월 1일에 8.1%로 54.6%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고 관세율을 제시하는 양허품목을 총 9,043개(HS 10단위 기준) 중 8,134개로 확대하여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7.5%를 양허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하여 온 관세인하에서 5개년계획이 1994년에 완료되는 등 관세율 인하 예시 계획에 따라 이미 우리의 관세율은 낮아져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타결관세 인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협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전동기와 발전기류,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전기저항기,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 절연전선·케이블과 기타의 절연체 등 우리나라의 주요 중전기류의

〈표 17〉 WTO협정 등에 의한 우리나라의 주요 중전기제품의 연도별 양허관세율표

(단위 : %)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양 허 관세율	22.6	20.2	17.8	15.4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WTO협정 등에 의한 우리나라의 전자의료기기류의 연도별 양허관세율표, 1995

연도별 양허관세율 인하 계획은 1996년 현재 20.2% 수준인 현재의 관세율을 1988년까지 13.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양허일정은 표 17과 같다.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관세 양허 사항을 정리하면 다

〈표 18〉 주요국의 관세양허 내용

국 가 명	UR전 관세율	WTO양허 관세율	인하율	UR전 무관세 비중	WTO양허 무관세 비중
미 국	5.4	3.5	35	10	40
일 본	3.9	1.7	56	35	71
캐나다	9.0	4.8	47	21	39
오스트리아	10.5	7.1	32	32	38
스위스	2.2	1.5	32	26	35
호 주	20.1	12.2	39	8	16
E C	5.7	3.6	37	24	38
아르헨티나	38.2	30.9	19	9	0
브라질	40.7	27.0	34	8	5
홍 콩	0.0	0.0	0	100	100
말레이시아	10.0	9.1	9	19	23
멕시코	46.1	33.7	27	0	1
필리핀	23.9	22.5	6	0	0
싱가포르	0.4	5.1	0	97	46
태 국	35.8	28.1	22	6	1
체 코	4.9	3.8	22	14	16
헝가리	9.6	6.9	28	19	21
폴란드	16.0	9.9	38	4	11
한 국	18.0	8.3	54	4	26

자료 : A. Hođa, "Trade Liberalization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Presented on the Informal Workshop on the New World Trading System, April 1994

음 표 18과 같다.

이러한 讓許關稅率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기술 및 품질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중전기기업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국내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 오겠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기술수준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관세율인하와 讓許품목의 擴大는 우리 상품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수출여건이 개선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이번 기회를 중전기 산업의 발전계기로 삼아 국제 경쟁력 배양의 전환점으로 삼아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중전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본관세율 조정을 통한 중전기 산업의 보호가 어려워졌으므로 향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 제도 등 WTO협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주요국의 관세양허 내용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도 동시에 인하되어 교역 상대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